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합106443 판결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1229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합106443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1. A 주식회사

특별대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2. C

망 D의 소송수계인

3. E

4. F

5. G

피고 3, 4,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 모 I

6. J

피고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K, 모 L

7. M

8. N

피고 7, 8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 모 P

피고 3 내지 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자람

변론 종결 2023. 3. 8.

판결 선고 2023. 4.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22,479,000원 및 그 중 815,330,592원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3. 1. 26.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 F, G, J, M, N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각 137,079,833원 및 그 중 각 135,888,432원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3. 1. 26.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망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01,762,3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01,762,3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G, J, M, N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대출 등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제1, 2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이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제1 신용보증약정(Q)	2019. 10. 14.	2019. 10. 14.~ 2020. 10. 13.	255,000,000원
제2 신용보증약정(R)		552,500,000원	
합계	807,5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망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S은행 대전북지점(이하 'S은행'이라고 한다)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2019. 10. 16. 300,000,000원(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 2019. 10. 17. 650,000,000원(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 합계 9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20. 9. 18. S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이자연체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1. 24. S은행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대위변제금 합계 815,330,592원(제1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금 257,130,183원 + 제2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금 558,200,409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S은행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대위변제한 금원 외에도,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망 D에게 청구 가능한 ① 대지급금은 5,303,956원이 발생하였으나, 송달료 환급액 60,358원을 충당한 나머지 현재 대지급잔액금은 5,243,598원이고, ② 미수위약금은 합계 1,904,810원(제1 신용보증약정 미수위약금 601,520원 + 제2 신용보증약정 미수위약금 1,303,290원)이 발생하였으며, ③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0. 11. 24.부터 현재까지 연 8%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다. 망 D과 피고 C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 등

- 1) 망 D은 2020. 8. 5. 기준 피고 C에게 193,533,000원의 대여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2) 망 D은 2020. 8. 5.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2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220,000,000원 중 120,000,000원은 피고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T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59,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118,237,642원)를 말소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원은 망 D이 피고 C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위 193,533,000원의 대여금 등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3) 망 D과 피고 C는 2020. 8.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3553호로 피고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망 D, 근저당권자 T조합, 채권최고액 55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라. 망 D의 사망과 소송수계 등

- 1) 망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7. 19. 사망하였다.

2) 이후 망 D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B, H, K, O은 대전가정법원 2021년 단1160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3) 이어서 망 D의 손자녀들인 피고 E, F, G, J, M, N는 대전가정법원 2022년 단10562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2022. 12. 22.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망 D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8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구상금 및 그 연대보증금(이하 '구상금'이라고 한다)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822,479,000원(제1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257,130,183원 + 대지급잔액금 5,243,598원 + 미수위약금 601,520원 + 제2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558,200,409원 + 미수위약금 1,303,290원) 및 그 중 815,330,592원(제1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257,130,183원 + 제2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558,200,40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1.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3. 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3. 1. 26.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 망 D의 소송수계인 피고 E, F, G, J, M, N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각 137,079,833원[(제1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257,130,183원 + 대지급잔액금 5,243,598원 + 미수위약금 601,520원 + 제2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558,200,409원 + 미수위약금 1,303,290원) × 각 1/6지분,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각 135,888,432원[(제1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257,130,183원 + 제2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558,200,409원) × 각 1/6지분]에 대하여 위 2020. 11. 24.부터 위 2023. 1. 26.까지는 위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망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회사는 2020. 6. 16.을 마지막으로 제1 대출에 대한 이자를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약 2개월 이후인 2020. 8.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S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인 2020. 9. 18.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11. 24. 대위변제하여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회사 및 망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원고의 망 D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② 설령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감정평가액 합계 약 133억 원에 이르는 충남 금산군 U 등 3필지 대지면적 합계 3,722㎡와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채권자인 S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약 80억 원에 이르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 회사의 S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포함한 전체 채무액 합계 약 77억 원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채권자 S은행에 확보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결국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① 주장은, 앞서 살펴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C의 ② 주장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자는 S은행이 아닌 원고인 점,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닌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인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망 D의 채무초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T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의 적극,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망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망 D이 본인 명의 외에 가족들 명의로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그가 주장하는 가족들 명의의 부동산들이 망 D의 소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적극재산

1	충남 금산군 V	답	1378m ²	220,000,000원	피고 C와의 거래가액
2	W		1183m ²		
3	X	주택 등	388.62m ²	279,856,080원	감정가1) 위 감정가는 기준시점이 2022. 3. 17.으로(갑 제10호증의5)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20. 8. 5.과 차이가 있으나, 감정기준시점이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고, 아래 소극재산과 비교하여 볼 때도 위 감정가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재산가액으로 보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감정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적극재산을 인정함
4	Y	창고	300m ²	176,400,000원	
5	Z	공장 등	329.26m ²	185,252,880원	
6	위 제3 내지 5번 부동산 소재 기계기구	-	-	37,200,000원	

1	충남 금산군 V	답	1378m ²	220,000,000원	피고 C와의 거래가액
7	예금(T조합)	-	-	1,762,358원	
합계	900,471,318원				

나) 소극재산

S은행	950,000,000원
T조합	118,130,830원
1,300,000,000원	
	140,500,000원
AA(임차인)	50,000,000원
AB단체	229,827,256원
피고 C(수익자)	193,533,000원
합계	2,981,991,086원

2) 판단 (가) 따라서 망 D이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망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C의 각 악의는 추정되는바, 망 D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 C의 선의의 항변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망 D이 소유한 저온창고에 인삼을 보관하는 등 관계를 형성해 온 점, ② 피고 C는 망 D을 수 백억 원대의 자산가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D은 2018. 12. 26. 및 2019. 5. 16. 두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타인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부탁하여 피고 C로부터 합계 180,000,000원을 빌려 간 점, ③ 한편 피고 C는 망 D에게 단 한 번도 위와 같이 빌려간 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약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고 피고 C가 선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 D이 2020. 8. 5.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20,000,000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액 118,237,642원인 채권자 T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 C의 변제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먼저 가액배상의 한도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3. 8.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감정가액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사해행위시인 2020. 8. 5. 망 D과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거래한 사실은 다툼 없고, 이 법원의 T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2020. 8.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T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118,237,64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220,000,000원에서 위 118,237,642원을 공제한 101,762,358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3. 8. 기준 원고의 망 D에 대한 채권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22,479,000원 및 그 중 815,330,592원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3. 1. 26.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바, 따라서 피고 C의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리금보다 적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서 위와 같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101,762,358원이다.

마. 소결론

피고 C와 망 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101,762,3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101,762,3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신혜영

판사나광윤

판사김명수

별지

1) 위 감정가는 기준시점이 2022. 3. 17.으로(갑 제10호증의5)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20. 8. 5.과 차이가 있으나, 감정기준시점이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고, 아래 소극재산과 비교하여 볼 때도 위 감정가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재산가액으로 보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감정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적극재산을 인정함